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

- 21. 12. 9(목), 사업총괄팀 -

□ 검토 배경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개정 지연과 적용기준 관련 연구자 문의 증가*
 - * 회계연도 일치로 대다수 과제가 12월 종료 예정으로 인해 사업부서를 통한 문의 증가
- 국연법 상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연구자 중복 문의가 발생할 이슈가 있으므로 사전 안내 필요

□ 연구자 주요 문의사항 안내

① 계속과제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준

-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에 따라 해당연차 시작일의 당시의 간접비고시비율 이내를 적용하였으나
 - 국연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(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)가 시작되는 시점 간접비고시비율 이내 적용을 원칙

<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(정부출연기관 간접비 비율 적용기준)>

-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)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>

- 간접비 비율의 조정
 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

- (문제점) 단계기간이 길 경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①간접비고시비율 현행화가 어렵고 ②**추가적인 승인절차 및** ③**예산편성·정산 시 과거 간접비고시비율 확인 등 연구자 행정부담 발생**

⇒ 혁신법 시행 이전 협약된 과제 중 해당연차 진도점검 후 예산편성 시 연구비(간접비) 변경을 신청하여 전문기관 담당자가 검토하여 협약변경(연차) 처리*한 경우 간접비 증액 가능

* **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11절의 단서조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이 조정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상향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 가능**

〈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관련 적용(안)〉

| 구분 | 혁신법 시행 이후 협약과제 2021.1.1. 이후 신규과제 또는 단계시작과제 | 혁신법 시행 이전 협약과제 2021.1.1. 이전 계속 연구개발과제 |
|---------------|---|---|
| (국연법) 간접비고시비율 | 최초시작일 또는 해당단계시작일 기준 | 과거 최초시작일 또는 해당단계시작일 기준 |
| (산업부) 간접비고시비율 | 최초시작일 또는 해당단계시작일 기준 | (2021년도) 해당연차 예산편성 시 적용한 간접비고시비율로 정함 (2022년도~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를 따르며 해당연차 예산편성 시 전문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여부를 정함 |

② **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 관련 직접비 40% 한도**

- 국연법 상 직접비의 40퍼센트 한도를 적용하고 부처가 달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산업R&D 규정은 별도의 언급 없음

⇒ 산업부 R&D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(기술 도입, 특정산업분야의 대규모 시험인증, 정형화된 시험평가방법 부재 시 공인 시험기관 자문을 통한 성적서 발급 등) 비중이 높은 과제가 존재하므로 40%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하여 사용 가능*

* 단, 40% 초과 시 정산과정에서 초과 사유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특성 관련 소명서 제출
〈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〉

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관련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% 한도

- 국연법 상 인건비는 연구개발비(현금)의 50% 한도를 적용하되 부처 인정 시 한도초과가 가능

⇒ 산업R&D 규정은 중소·중견기업의 청년채용·신규채용 독려를 위해 공고 상 인건비 현금 사용기준 충족* 시 50% 초과 사용 가능

* 신규채용·청년채용, 신규인력에 따른 기존인력 인건비, 창업초기기업 등

<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(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)>

-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.